##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8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신동욱・이만희・김민전

조은희 • 박준태 • 권성동

유용원 • 이철규 • 박정하

백종헌 · 윤한홍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자로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

그러나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1,120명의 참전유공자의 경우 두 차례의 참전이라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의 참전에 대해서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이와 관련한 별도의 보상은 없는 실정임.

이에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참전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하도록 함으로써 그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 임(안 제6조제1항).

법률 제 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되, 참전유 공자가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경우 그 각각에 관한 참 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유			
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			
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u>지급한다</u> .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하되, 참전유공자가 6・25		
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경우 그 각각에 관한 참전명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u>수당을 지급한다</u>		
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			
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u></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